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IRP 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IRP 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



이규성, 윤치선 지음



머리말 8

1 IRP란 무엇인가?

1 IRP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 14

2 IRP, 이럴 때 필요하다!

2 세액공제 혜택 받으며 노후자금을 모을 때 22

3 ISA 만기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 29

4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35

5 해외투자에 따른 세 부담을 덜고 싶을 때 41

6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47

3

내게 맞는 IRP를 선택하려면?

- 7 노후자금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저축하면 좋을까요? 54
- 8 IRP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63
- 9 증권사, 은행, 보험사의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70
- 10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76

4

적립금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나?

- 11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와 점검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84
- 12 실적배당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90
- 13 위험자산은 무엇이고,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나요? 94
- 14 IRP에도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나요? 100
- 15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한다는 TDF는 어떤 금융상품인가요? 106
- 16 TIF는 어떤 금융상품이고, TDF와 어떻게 다른가요? 112
- 17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17
- 18 적립금을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123

5

현명하게 인출하는 방법

- 19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나요? 130
- 20 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36
- 21 퇴직금을 IPR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41
- 22 연금을 개시하면 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요? 149
- 23 한 해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155

세금을 덜 낼 방법은 없을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두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얼마나 될까? 한창 소득이 많을 때는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절세 방법을 찾고, 은퇴할 때가 다가오면 월급이나 사업소득을 대체할 소득원을 찾게 된다. 그렇다면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만약 당신이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IRP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IRP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IRP에 이체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퇴직자가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IRP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과 같은 운용 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IRP는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이다. 2022년 4월부터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여를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이런저런 용도로 써버리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만큼 노후생활비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축적할 수 있다.

투자 수단으로서도 IRP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IRP에서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부터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와 리츠, 인프라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들 상품 중 하나를 골라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상품을 골라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수 있다.

이쯤 되면 IRP는 절세와 노후 준비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할 ‘머스트 해브 아이템(Must Have Item)’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IRP 가입자를 위한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IRP에 대한 안내서가 대부분 적립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설명하는 데서 그쳤다면, 이 책은 IRP에서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과 연금수령 등 인출 단계에서 가입자가 궁금해하는 점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IRP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2장에서는 언제, 누구에게 IRP가 필요한지 설명하고, 3장에서는 가입자가 IRP를 선택할 때 살펴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4장에서는 IRP 적립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위험자산 투자 한도, 디폴트옵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적립금을 중도인출 하거나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읽어도 되지만, 궁금한 부분을 찾아서 읽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구성했다. 아무쪼록 독자들이 성공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IRP란 무엇인가?

01. IRP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

01

IRP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

요즘은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금융제도와 금융상품의 명칭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글자만 가지고 제도와 상품 명칭을 얘기하다 보면, 일반 투자자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다. ‘IRP’도 그중 하나다. IRP는 영문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 우리말로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IRP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IRP는 퇴직연금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우리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IRP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우리나라는 한 직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겨두는 제도가 DB형 퇴

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이다.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금융회사에 적합한 퇴직급여를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다. 반면에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운용한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계좌에 퇴직급여 재원을 이체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려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IRP 제도를 설정하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본다. 이때는 별도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IRP는 퇴직급여 통산 장치다

평생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다. 통계청이

2022년 7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64세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기준으로 한 평균 근속기간이 15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 중 30년 이상 한 직장 에서 근속한 비중은 16.4%밖에 안 됐다. 즉 경제활동을 하면서 평균 한두 번 이상은 직장을 옮긴다는 얘기다.

퇴직급여는 소중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하지만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급여를 수령해 써버리면 노후자금이 모일 수 없다. 그래서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두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장치가 IRP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IRP에 이체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직장으로 이직 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에 모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RP는 절세 통장이다

먼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노후 대비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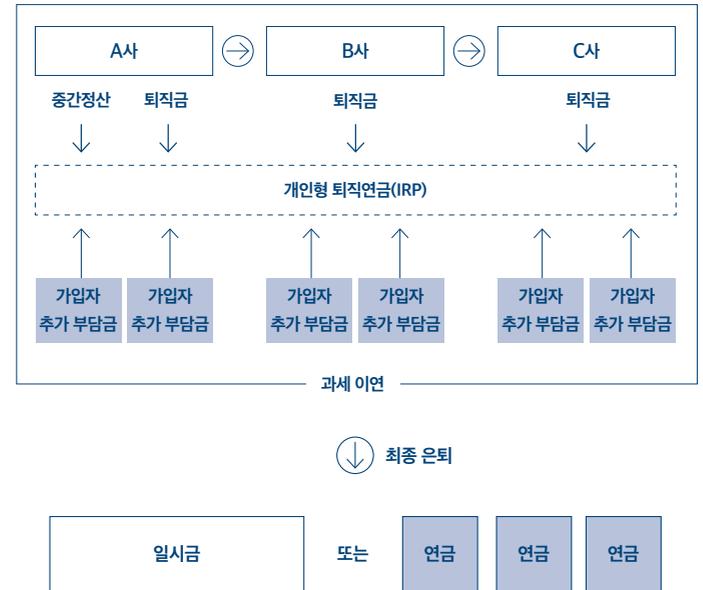
하다. IRP 가입자에게 다양한 질세 혜택을 주는 것이 그중 하나다. 먼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IRP에 가입하면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만기 때 수령한 자금을 IRP에 이체하는 때에도 이체 금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IRP를 운용하여 얻은 수익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다.

IRP는 계좌(account)다

IRP는 하나의 금융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account)다. 계좌라는 말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과일 바구니를 생각하면 된다. 과일가게에 가면 사과, 배, 포도, 바나나 등 다양한 과일이 있다. 과일 바구니를 살 때 한 종류의 과일만 담은 사람도 있지만, 사과, 배, 포도 등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 담은 사람도 있다.

IRP도 마찬가지다. IRP가 과일 바구니라면, 과일 바구니에 담긴 사과, 배, 포도를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IRP로는 예금과 보험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와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리츠(REITs)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를 골라 적립금을 전부 투자해도 되지만, 여러 금융상품을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할 수도 있다.

IRP란?



IRP, 이럴 때 필요하다!

- 02. 세액공제 혜택 받으며 노후자금을 모을 때
- 03. ISA 만기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
- 04.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 05. 해외투자에 따른 세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06.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직장인은 1월, 자영업자는 5월이 되면 세금 문제로 머리가 아파진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절세를 하면서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는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고, 저축한 금액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저축보다는 IRP에 가입했을 때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계좌에는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축한 돈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연금저축만 가입해서는 한 해에 아무리 많아도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RP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한 해 연금저축에 600만 원 이내로 저축한 금액과 IRP에 저축한 금액을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연금저축에 한 해 600만 원 한도까지 저축한 상황에서 세액공제 효과를 높이려면 추가 저축은 IRP에 해야 한다.

IRP 세액공제 한도



세금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

그렇다면 IRP에 가입해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이는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저축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종합소득이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보다 적은 사람에게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한 해에 900만 원을 IRP에 저축했다고 치자. 해당 근로자의 연봉이 5,500만 원보다 많다면 연말정산 때 118만 8,000원(=900만 원×13.2%)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 원보다 적다면 148만 5,000원(=900만 원×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한 세금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까지만 환급된다.

IRP 가입자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과 최대 환급 세액(2023년 기준)

종합소득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 공제 저축한도	세액 공제율	최대 환급 세액
4,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900만 원	16.5%	148만 5,000원
4,5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13.2%	118만 8,000원

세액공제는 이월해서도 받을 수 있다

IRP에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인데, 세액공제는 한 해 9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저축했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아직 연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5세인 직장인이 지난해 IRP에 1,800만 원을 저축하고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다고 해보자.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있어 저축할 여력이 없다. 이때는 지난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 중 900만 원을 올해 저축한 금액으로

이월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올해는 저축을 하지 않고도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23년 세제 개편】 연금계좌 세액공제 저축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기준 조정

과거 연금계좌 세액공제 저축 한도는 연금계좌의 종류, 가입자의 나이, 소득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렇게 복잡한 구분 기준을 따르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이 같은 구분 기준이 대폭 간소화됐다.

202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득과 나이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를 달리 적용해 왔지만, 2023년부터는 이 같은 차이를 없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최대 600만 원까지, IRP가입자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보다 많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 이보다 적으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03

ISA 만기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기준 조정

개정 전(2022년 이전)			개정 후(2023년 이후)			
종합소득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세액공제 한도		세액 공제율	종합소득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세액공제 한도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4,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16.5%	4,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900만 원	16.5%
4,000만 원 초과 (5,500만 원)			13.2%	4,500만 원 초과 (5,500만 원)		13.2%
1억 원 초과 (1억 2,000만 원)	700만 원					

이만기 씨는 3년 전 ISA에 가입해 적립한 자금을 지금까지 운용해 왔다.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면 적립금을 찾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 씨가 적립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왕이면 절세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싶다.

ISA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기금액과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다음 해지해 받은 금액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체한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는 어떤 금융상품인가?

ISA(Individual Saving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

ISA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고, 만기는 3년 이후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도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이 지났다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ISA 가입자는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투자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손익을 통산한 다음 일부는 비과세(한도: 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9%(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

ISA 가입자는 한 해에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때 연간 납입 한도는 이월할 수 있다. 1년 차에 1,000만 원만 저축했다면, 2년 차에는 3,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기존에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 가입자는 그 계약금만큼 한도를 차감하고 ISA에 적립할 수 있다.

만기 금액을 IRP로 이체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의무가입 기간이 지났다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만기 금액과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다음 해지해 수령한 금액은 IRP와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 있다. 본래 연금저축과 IRP에는 한 해에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ISA 만기 금액(의무가입 경과 후 해지 금액 포함)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ISA 만기 금액을 IRP와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가입자 소득에 따라 다르다. 가입자의 종합소득이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근로자가 ISA 만기 금액 5,000만 원을 IRP에 이체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이체 금액의 10%가 3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또한 IRP 가입자의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300만 원의 13.2%에 해당하는 39만 6,000원

의 세금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ISA는 의무가입 기간(3년)이 지나면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 다음 다시 ISA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 점을 활용하면 3년마다 한 번씩 ISA 적립금을 IRP와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SA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가입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 직전 3개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납입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납입 한도 이월 가능) • 기존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형저축 계약금액 차감
의무가입 기간	- 3년
편입 가능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성 상품: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 펀드: 공모 펀드, 국내 상장 ETF - 파생결합증권: ELS, DLS, ELB, DLB - 주식: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상장 리츠(REITs), K-OTC 거래 비상장 주식(중소·중견기업에 한정) - 채권: 국채, 지방채, 국내법인 회사채
중도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가입 기간 경과 전 중도해지 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해 소득세 상당액 추징 -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 적용 •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저축 취급 기관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 또는 파산
중도인출	의무가입 기간 경과 전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도인출 허용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다음 순소득에 대해 •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 금액 분리과세(세율 9.9%) - 서민형, 농어민(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가입자 • 400만 원까지 비과세, 400만 원 초과 금액 분리과세(세율 9.9%)
연금계좌 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금액(의무가입 경과 후 해지한 금액 포함) 전부 또는 일부 연금계좌 이체 가능 - 연금계좌 이체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 세액공제

04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김철수 씨는 지금 일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인사팀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가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냥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는 걸까? 반드시 IRP에 퇴직금을 이체해야 한다면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가입한 IRP로 이체해도 될까, 아니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새로 IRP에 가입해야 하는 걸까?

퇴직급여는 직장인의 소중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퇴직급여에 대해 이래저래 궁금한 것이 많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도 그중 하나다.

퇴직급여는 언제,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자와 별다른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IRP가 있으면 해당 계좌로 이체해도 되고, 새로이 IRP를 개설해 이체할 수도 있다.

다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 되거나,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IRP뿐만 아니라 연금저축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다. 그리고 퇴직자가 원하면 일시에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한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한다. 반면에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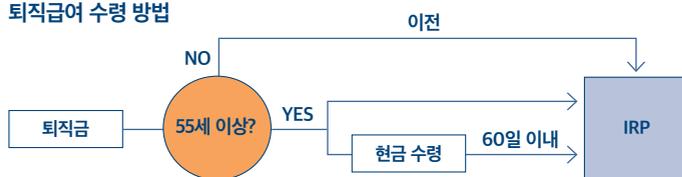
연금계좌로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전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면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했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연금수령 11년 차부터 40%) 감면받는다.

일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할 수 있나?

이미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현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 중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만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도 이체 비율에 맞추어 환급받는다.

퇴직소득세 환급 신청은 퇴직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자가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금융회사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금을 환급받아 IRP에 적립해 주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



퇴직급여 이체는 기존 IRP로 할까, 새로 가입한 IRP로 할까?

퇴직급여를 기존에 가입한 IRP에 이체하는 것이 나올까, 아니면 새로이 IRP를 개설해 이체하는 것이 유리할까?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다.

먼저 중도인출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IRP 적립금은 55세 이후에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없고, 자금이 필요하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한다. 만약 기존에 가입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했다가 중도해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새로 이체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가량 감면받을 수 있겠지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 하면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저축해 왔던 원금과 운용 수익에까지 기타소득세(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가 부과된다. 이들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연금 개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중도에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기존 IRP가 아닌 새로운 IRP를 개설해 그 곳으로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것이 낫다. 다만 금융회사 한 곳에 하나의 IRP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IRP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해야 한다.

중도인출 계획이 없다면 기존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것이 더 낫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하면 현금 흐름 관리가 더 간편할 것이다. 한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의 경우 연간 1,200만 원 초과 인출 시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때 연 1,200만 원 초과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책정이 된다. 따라서 세금 관리 측면에서도 한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금융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IRP에 부과되는 계좌 관리 수수료는 계좌 잔고가 많을수록 할인해 주는 경향이 있어, 수수료 측면에서도 한 계좌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05

해외투자에 따른 세 부담을 덜고 싶을 때

박해자 씨는 최근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그래서 IRP 적립금을 해외 펀드와 ETF에 투자하려고 한다. 일반 증권사 위탁 계좌에서 해외 펀드와 ETF에 투자하는 것과 IRP에서 투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특히 IRP에서 해외투자를 하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일반 투자자가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투자 ETF에 투자하거나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투자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다. IRP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 투자할 수 있지만, 해외 상장 주식과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해외 상장 주식과 ETF에 투자하면 세금은?

해외에 상장된 주식과 ETF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 방

법부터 살펴보자. 주식과 ETF에 투자해 얻는 수익은 매매차익과 배당(분배금)으로 나뉜다. 이때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배당(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과세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한다. 따라서 매매차익이 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할 우려는 없다. 둘째, 과세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다음 과세한다. 셋째, 과세 대상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넷째, 양도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를 적용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박해자 씨가 지난해 해외 상장 ETF 2개를 매도해 한 ETF에선 1,000만 원의 이익을, 다른 ETF에선 25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먼저 이익 1,000만 원에서 손실 250만 원을 상계하면 750만 원이 남는다. 여기서 다시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면 500만 원이 남는다. 여기에 세율 22%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은 110만 원이다.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에 투자하면 세금은?

이번에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방법을 살펴보자. 해외 상장 ETF에서 얻은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15.4%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그리고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한 해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된다.

그리고 일반 위탁 계좌에서 거래하면 매매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과세한다. 예를 들어 박해자 씨가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 2개를 매도해 1,000만 원의 이익과 25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보자. 이때 250만 원 손실을 본 것은 내버려두고, 1,000만 원 이익을 본 것에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한다. 이렇게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않고 과세하면 배

당소득세 부담은 커지고, 그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해외투자 ETF에 대한 과세

구분	매매차익	분배금	비고
해외 상장	양도소득	배당소득	· 양도소득세율 22% (기본 공제 250만 원) · 배당소득세율 15.4%
국내 상장	배당소득 (보유 기간 과세)	배당소득	

IRP에서 해외투자 ETF에 투자하면 세금은?

IRP에서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IRP에서는 해외투자 ETF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까?

먼저 IRP 가입자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하면 즉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IRP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하더라도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고스란히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배가된다.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주는 것도 장점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일반 위탁 계좌에서는 손실을 상계하지 않고 이익이 실현되는 즉시 과세한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운용 수익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한 해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만약 1,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해야 한다.

55세가 되기 전에 IRP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세율은 16.5%로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높다. 하지만 IRP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김종수 씨는 종업원이 10명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해 입사하여 이제 1년이 다 되어간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해 동료에게 물었더니 금융회사에서 IRP를 가입하라고 알려줬다. 당장 퇴직할 것도 아닌데, 지금 IRP에 가입해야 하는 걸까?

IRP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나는가? 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퇴직급여를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둘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IRP의 기능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종업원에게 IRP에 가입하도록 하기도 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덜려면?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

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손쉬운 방법은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무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탐탁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내부에 보관한다. 따라서 회사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상태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회사에 맡겨둔다. 이에 회사 재정에 문제가 있어도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특례를 두고 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제도를 설정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특례로 가입하는 IRP를 개인이 가입하는 IRP와 구

분하기 위해 ‘특례 IRP’ 또는 ‘기업형 IRP’라고 부른다.

기업형 IRP를 도입할 때 준수해야 할 것은?

기업형 IRP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지 않고도 사실상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용자는 IRP 부담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급여 채원을 회사 밖 금융회사에 보관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받게 된다.

기업형 IRP를 도입할 때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IRP에 납입해야 한다.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IRP에 이체된 부담금은 근로자가 운용한다. 셋째,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근로자가 추가

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형 IRP 주요 내용

부담금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부담금 납입 주체	사용자(기업), 근로자가 원하면 추가 적립 가능
운용 지시	근로자
퇴직급여 수준	부담금과 운용 실적 (개별 근로자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3

내게 맞는 IRP를 선택하려면?

07. 노후자금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저축하면 좋을까요?

08. IRP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09. 증권사, 은행, 보험사의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10.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노후자금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저축하면 좋을까요?

김연수 씨는 노후자금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저축할지 고민이다. 언뜻 보기에 둘은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고 적립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똑같은 상품을 이름만 달리해서만 들지는 않았을 테니,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상품이 더 좋을까?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연금계좌라고 부른다. 그만큼 이 둘은 공통점이 많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 주고, 운용하며 얻은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한 순이익을 인출할 때 과세한다. 그리고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이렇게 공통점이 많기는 해도 이 둘이 똑같지는 않다. 둘 다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지만, 세액공제 한도에서 차이가 난다. 이뿐만 아니라 투자 가능한 상품과 중도인출 조건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차이점을 충분히 살펴야 할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나 되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보다 IRP가 더 크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에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고, IRP 가입자는 한 해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만 놓고 비교하면 연금저축보다는 IRP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을 저축할 때 세액공제 대상 금액

연간 저축 금액(9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금액
연금저축에 저축한 금액	IRP에 저축한 금액	
900만 원	-	600만 원
800만 원	1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9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2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1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	900만 원	900만 원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날까? 그렇지 않다.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한 해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900만 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한 해에 900만 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나누어 저축한다고 해보자.

먼저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전부 저축하면 6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800만 원을 저축하고 IRP에 100만 원을 저축하면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 전부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IRP에 최소 30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한다.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

연금저축과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다르다. IRP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에서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원리금보장 상품으로는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과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Equity Linked Bond, 주가연계파생결합사

채)가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과 우체국 예금에도 가입할 수 있다. 투자 가능한 실적배당상품에는 펀드, ETF, 실적배당보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N, 리츠, 인프라펀드 등이 있다.

연금저축은 보험, 신탁, 펀드로 나뉜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다양한 펀드와 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원리금보장형 상품, ETN에는 투자할 수 없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여부에도 차이점이 있다. IRP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 위험자산으로는 주식 편입 비중이 40%가 넘는 펀드와 ETF, 하이일드채권 펀드, 리츠 등이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이와 같은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구분		투자 가능 여부			
		IRP	연금저축		
			펀드	보험	
실적배당상품	펀드	O	O	X	
	실적배당보험	O	X	X	
	국내 거래소 상장	ETF	O	O	X
		ETN	O	X	X
		리츠	O	O	X
인프라펀드		O	X	X	
원리금보장상품	예금	O	X	X	
	보험	금리연동형	O	X	O
		이율보증형	O	X	X
	ELB	O	X	X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나?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에 인출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때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이 밖에 가입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

연금저축펀드는 별도로 계좌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IRP는 계좌관리 수수료를 부과한다. 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평균 적립금의 0.3% 정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비대면 방법으로 IRP에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는 경우에 계좌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할 때는 이 같은 수수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ETF에 투자하는 사람은 매매 수수료도 비교해 봐야 한다.

IRP에서 ETF를 사고팔 때는 매매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ETF 매매가 잦은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보다는 IRP가 적합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

구분	IRP	연금저축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자 퇴직일시금 수령자	제한 없음
납입 한도	- 연금계좌 합산 연간 1,800만 원 + ISA 만기자금 + 1주택(기준 시가 12억 원 이하) 고령 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기존 주택 양도 후 더 낮은 가격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그 차액(새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기존 주택 양도가액 기준, 1억 원 한도)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 5년 이상 단, 퇴직급여가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가입 기간 요건 미적용	
세금	연금수령	- 퇴직급여에 대한 세율: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 - 운용 수익 및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부담금에 대한 세율: 3.3~5.5% -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부담금: 비과세
	연금외수령	- 퇴직급여에 대한 세금: 퇴직소득세 - 운용 수익 및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부담금: 16.5%(기타소득세) -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부담금: 비과세
상품 운용	한 계좌에서 다양한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투자 가능	금융회사별 한 종류의 상품으로 운용
중도인출	중도인출 가능 사유 해당하면 가능	자유로운 중도인출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 시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중도해지	자유로운 해지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연금계좌의 중도인출 가능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른 적용 세금

사유	IRP 중도인출 가능 여부	연금저축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도인출 시 적용 세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 수익	퇴직급여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	연금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율의 70%)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 이주	X		연금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율의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요양 의료비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		기타소득세 (16.5%)	퇴직소득세

8

IRP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김수령 씨는 다음 달 이직에 앞서 퇴직급여를 수령할 IRP를 개설하고자 한다. 그래서 어떤 금융회사 IRP에 가입할지 결정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다들 비슷해 보여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알 수가 없었다. IRP를 선택할 때는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

개별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IRP는 모두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종류와 서비스에서 차이가 난다. 이뿐만 아니다. 크지는 않아도 계좌관리 수수료도 저마다 다르고, 연금 지급 방법도 제각기 다르다.

그래서 IRP를 개설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한번 가입하고 난 후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타려면 IRP에서 투자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피하려면 애당초 처음에 IRP를 가입할 때 자신의 상황과 기준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는가?

IRP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업권마다, 그리고 같은 금융업권 내에서도 IRP에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다르다. 따라서 IRP를 선택할 때는 IRP에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살펴보자. 원리금보장상품 하면 제일 먼저 은행 정기예금을 떠올린다. 하지만 은행에서만 정기예금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저축은행과 우체국에서도 IRP에 정기예금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사에는 이율보 증보험(GIC), 증권사에서는 ELB를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할 때는 금리와 만기, 그리고 예금자 보호 여부를 살펴야 한다.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은행보다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금리가 높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금자보호한도까지만 가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보험사의 이율보

증보험과 증권사 ELB가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데, ELB는 예금 자보호가 안 된다.

만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원리금보장상품을 중도에 해지 하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고 나서 새로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됐지만, 그렇다고 해도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 전까지 6주 동안은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번에는 실적배당상품을 살펴보자. 대표적 실적배당상품으로 펀드를 떠올린다. 펀드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먼저 펀드 내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나뉘고, 투자 지역에 따라 국내와 해외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투자 전략과 스타일에 따라서도 펀드를 구분할 수 있다. 요즘은 TDF와 밸런스드펀드와 같이 펀드가 알아서 자산을 배분하고 그 비중을 조정하는 자산배분형펀드가 IRP 가입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밖에 IRP에서 제공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와 리츠가 있다. 이들 금융상품은 주식처럼 실시

간으로 사고팔 수 있다. 그래서 실시간 매매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에서 주로 제공한다. 최근에는 은행들 중에서 신탁을 활용해 투자 가능하도록 ETF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실시간 매매는 불가능하다. 리츠는 일부 대형 증권사에서만 IRP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수수료가 얼마만큼 부과되는가?

IRP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크게 계좌관리에 필요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와 개별 투자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보수)로 나눌 수 있다.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금융회사가 IRP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입자에게 받는 수수료인데, 매년 1회, 계약한 날에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수수료는 일별평가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수수료율은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난다. 최근 IRP 유치 경쟁으로 수수료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IRP에 가입한다면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22년 10월 기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율은 증권사가 0.00~0.38%, 은행은 0.16~0.35%, 생명보험은 0.20~0.60%, 손해보험은 0.20~0.50%이다. 이처럼 금융회사마다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IRP를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https://100lifepan.fss.or.kr>)를 이용하면 IRP 수수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품 보수는 IRP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수수료로 금융상품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신탁 수수료도 있다. 앞서 은행에서 ETF를 거래할 때 신탁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때 부과되는 것이 신탁 수수료다.

내게 적합한 연금수령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IRP에 가입할 때는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연금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생명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종신형 인출 방법이 그렇다. 종신형 인출을 선택하면 가입자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

는 대신 중도에 연금수령 방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종신형 이외에도 금융회사마다 다양한 인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두고 수령할 수도 있다. 그리고 IRP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만큼 인출하는 방법도 있다. 또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도 있다. 따라서 IRP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연금수령 방법이 어떤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IR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

수령 방법	주요 내용
확정금액형	- 일정한 금액을 원하는 주기마다 수령하는 방식 -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확정기간형	- 가입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 운용 수익에 따라 매달 인출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연금수령한도 방식	-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만큼 인출하는 방식 -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 - 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개시일(개시 이후는 매년 1월 1일) 평가금액}}{(11-\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비정기연금	-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 - 목돈이나 급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 가능
종신연금방식	-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제공, 연금 개시 이후에 중도해지 불가

증권사, 은행, 보험사의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나순덕 씨는 IRP에 가입하려고 한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모두 IRP를 취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도 가입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회사는 모두 IRP를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다들 IRP라는 같은 이름을 내걸고 판매하고 있지만 금융업권별로 IRP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따라서 IRP를 개설할 때 해당 금융회사가 자신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싶다면?

IRP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에서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부터 펀드와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여러 금융상품 중 하나를 골라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금융상품을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금융회사마다 IRP에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특히 실

적배당형상품에서는 금융업권과 금융회사 간 차이가 확연하다.

일반 펀드는 은행, 증권사 그리고 신탁업 인가를 받은 보험사에서 취급하지만, ETF와 리츠처럼 거래소에서 상장된 금융상품은 증권사 IRP를 통해서만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도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은행권은 신탁 방식으로 ETF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신탁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실적배당상품, 특히 ETF와 리츠에 투자하고 싶다면 증권사를 찾아 IRP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업권별로 IRP에서 투자 가능한 실적배당상품

구분	특징	투자			
		증권사	보험사	은행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상품	○	△*	○	
실적배당보험	일반 펀드와 비슷하게 운용되는 보험	○	○	×	
거래소 상장	ETF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펀드	○	×	△**
	ETN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파생결합증권	○	×	×
	리츠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장 간접투자 상품	○	×	×
	인프라 펀드	국내외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	○	×	×

* 신탁업 인가 받은 보험사만 펀드 제공 가능 ** 신탁계약을 통해서만 ETF 거래 가능

접근성을 우선시한다면?

과거에는 집이나 회사 근처에 있는 금융회사를 방문해 IRP에 가입하는 상품이 많았다. 그래서 넓은 지점망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은행권 IRP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웹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 IRP에 가입하는 사람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 요즘은 지역적 접근성보다는 웹이나 모바일 상에서 사용자 환경이 얼마나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가입자가 궁금한 내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따라서 IRP에 가입하기 전에 금융회사의 웹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사용자 환경이 얼마나 편리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곧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면?

IRP에서 제공하는 연금수령 방법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금융업권별로 다양한 연금 지급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즉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생명보험사를 찾아 IRP에 가입해야 한다. 유일하게 생명보험사에서만 종신행연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종신행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소득세 부담도 조금 덜 수 있다. IRP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연금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통상 연금수령 당시 가입자 나이가 55세 이상 69세 이하면 5.5%(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 70세 이상 79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종신행연금을 선택하면 55세 이상 79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에는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55세부터 69세 사이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종신행연금을 선택할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조기 사망 시 잔여 재산이 유가족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기간이나 금액을 정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권사와

은행권 IRP를 선택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금융회사마다 특화된 연금 지급 방법을 제공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금액이나 기간을 정해 두지 않고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인출하는 비정기연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맞춰 세금 감면 혜택은 유지하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이 인출되도록 알아서 연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금융업권 IRP 특징 비교

구분	증권사	은행	보험사
운용 상품	정기예금, ELB, 펀드, 국내 거래소 상장 ETF, 리츠 등	정기예금, 펀드, ETF 등 (은행 ETF는 실시간 매매 불가)	금리형 보험, 펀드
연금수령	확정기간형, 확정금액형, 비정기연금	확정기간형, 확정금액형	종신행, 확정기간형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박조정 씨는 은행에서 IRP에 가입했다. 여태껏 예·적금과 펀드를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해왔던 까닭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ETF와 리츠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은행에서도 ETF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시간 매매가 안 되고, 리츠에는 아예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ETF와 리츠를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로 IRP를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IRP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 IRP 계약을 이전하려면 옮기려고 하는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찾아가도 되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IRP를 이전하려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IRP를 이전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왜냐하면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IRP를 이전하

면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 회사들이 IRP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특히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이전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다.

IRP 계약 이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

하지만 언제든지 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IRP 적립금 중 일부만 이전할 수는 없다. 이전하려면 적립금을 전부 옮겨야 한다. 이미 연금이 개시된 IRP로도 이전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연금을 수령 중인 IRP를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IRP로는 이전할 수 있다.

IRP 가입 시기에 따라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연금수령 요건과 관련이 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IRP는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됐지만, 그 이후에 가입한 IRP는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IRP에서 그 이전에 가입한 IRP로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이를 허용하면 최소 연

금수령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IRP를 그 이후에 가입한 IRP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최소 연금수령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IRP와 연금저축 간의 계약 이전은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이들 계좌에 퇴직급여가 이체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이체가 가능하다.

IRP 계약 이전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계약 이전을 할 때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을까? 통상 이 같은 현물 이전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IRP 계약을 이전하려면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전부 매도해 현금화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현금을 이전한 다음 새로이 금융상품을 매수해야 한다. 금융상품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과정 자체도 번거롭지만, 매도와 매수 사이에 시차

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이 사이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금수령한도도 고려해야 한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IRP에서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IRP로 계약을 이전하면 연금수령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연금을 인출하면 세 부담이 늘어난다. 연금수령한도와 관련해서는 2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4

적립금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나?

11.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와 점검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2. 실적배당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3. 위험자산은 무엇이고,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나요?
14. IRP에도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나요?
15.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한다는 TDF는 어떤 금융상품인가요?
16. TIF는 어떤 금융상품이고, TDF와 어떻게 다른가요?
17.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8. 적립금을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와 점검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김안전 씨의 IRP 운용 원칙은 '원리금 보장'이다. 노후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 절대로 원금을 손해 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리금보장상품이라면 정기에금만 생각했었는데, 정기에금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는 게 아닌가? 이들 원리금보장상품의 특징과 선택할 때 살펴야 할 점에 대해 알고 싶다.

IRP에서 제공하는 대표적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정기에금이 있다. 과거에는 은행 정기에금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저축은행과 우체국 정기에금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증권사의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과 이율보증형보험(GIC)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상품 특징과 가입할 때 살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와 특징은?

먼저 대표적 원리금보장상품인 정기에금부터 살펴보자. 정기에

금 하면 은행을 떠올리지만, 저축은행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도 IRP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과 함께 확정된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이자는 가입 당시 제시한 금리를 적용해 계산한다. 정기예금 만기는 3개월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증권사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ELB와 RP를 제공한다. ELB(Equity Linked Bond)는 증권사가 자신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이다. 이러한 파생결합사채는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 등의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금융상품이다.

보험사의 GIC(Guaranteed interest contract, 이율보증형 보험)은 가입 당시의 정해진 이율로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GIC 외에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금리연동보험상품이 있다. 금리연동보험의 경우 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어 이자를 지급한다. 이때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은 보험사에서 매월 공시한다.

각각의 원리금보장상품은 해당 상품을 만든 금융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는 정기예금만, 증권사에서 ELB만, 보험사에서는 GIC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금융회사 간 상품 협약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에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IRP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적립금을 은행과 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보험사 GIC에 맡길 수 있다.

만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나?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할 때는 만기와 금리를 살펴야 한다. 아울러 예금자보호한도도 함께 살펴야 한다. 원리금보장상품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지하면 처음 계약할 때 약속한 금리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다음에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만기 수령 금액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된다.

종전에는 정기예금상품이 만기가 되면 동일한 만기를 가진 정기예금에 만기 수령 금액을 다시 예치해 주는 자동 재예치 조

향이 있었다. 그래서 정기예금 가입자가 만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이 도입되면서 이 같은 자동 재예치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 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IRP에서 가입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6주가 지났는데도 가입자가 만기 수령 금액에 대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발동된다.

그렇다면 디폴트옵션에 가입하면 만기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만기가 도래한 다음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까지 6주 동안 만기 수령 금액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IRP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수령 금액이 계속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 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은 모두 예금자보호가 되나?

원리금보장상품은 모두 예금자보호가 될까? 그렇지 않다. 정기예금, 이율보증보험, 금리연동보험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ELB와 RP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당 5,000만 원까지다. 예금자보호한도는 IRP를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IRP에 금융상품을 제공한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가령 A 증권사에서 가입한 IRP에서 B 은행의 예금에 5,000만 원, C 보험사의 이율보증형 보험에 5,000만 원을 가입했다면 B 은행과 C 보험사에서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적배당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투자 씨는 정년퇴직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IRP 적립금은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싶다.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실적배당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IRP는 원리금보장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적배당상품도 제공한다. 처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IRP에 제공된 실적배당상품으로는 일반 펀드와 실적배당보험만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 리츠, 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IRP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IRP 가입자는 다양한 국내 공모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펀드는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분류된다. 주식형 펀드는 투자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식 편입 비중이 60%가 안 되는 펀드를 혼합형 펀드라고 한다. 채권형 펀드는 주식이 전혀 편입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IRP에서는 투자 적격인 BBB 등급 이상인 채권 위주로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IRP 가입자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실적배당보험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실적배당보험은 펀드와 유사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ETF와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나?

IRP 가입자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 ETN, 리츠, 인프라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둔 것이다. 일반 펀드는 약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펀드 매니저가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ETF는 정해진 지수를 추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일반 펀드 투자자가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역량을 살펴야 하듯이, ETF 투자자는 해당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ETF와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ETN이 있다. ETN(Exchange Traded Note)은 원자재, 환율,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채권 형태의 파생결합

증권이다. ETN도 ETF와 비슷하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하지만 ETF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데 반해 ETN은 증권사가 발행한다. 그리고 ETF는 만기가 없는데 반해, ETN은 만기가 정해져 있다.

리츠(REI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인프라 펀드는 국내외의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IRP에서 투자할 수 없는 실적배당상품은?

IRP에서는 공모 펀드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 ETN, 리츠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공모 펀드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고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원자재 선물 ETF와 달러 선물 ETF가 여기 해당한다. 그리고 지수 움직임의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레버리지 ETF나 주가 하락을 추종하는 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위험자산은 무엇이고,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나요?

박가입 씨는 최근 IRP에 가입해 ETF 거래를 시도해 보았다. 그런데 적립금을 S&P500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전부 투자하려 했더니,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해 매수할 수 없다고 한다. 위험자산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맞춰 ETF를 매수했다. 그랬더니 몇 달 뒤에 금융회사에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했다는 통보를 해왔다. 도대체 위험자산은 무엇이고,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험자산은 무엇이고, 투자 기간 중에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위험자산이란?

대표적 위험자산으로는 주식 편입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가 있다. 주식 비중이 40% 이하인 혼합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는 위험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형 펀드 중에도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데, 투기 등급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채권형 펀드가 여기 해당한다. 리츠와 인프라펀드도 위험자산으로 분류한다.

예외도 있는데, 적격 TDF가 대표적이다. 본래 TDF는 주식을 40% 이상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하지만 운용 기간 내내 주식 비중이 80%를 넘지 않고, 목표 시점이 지난 다음 주식 비중이 40%를 넘지 않는 TDF는 위험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TDF를 ‘적격 TDF’라고 한다.

디폴트옵션 상품도 위험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디폴트옵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RP 가입자가 적립금 중 70%는 주식형 펀드, 나머지 30%는 정기예금에 투자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디폴트옵션으로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펀드를 선정했다.

이 경우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고 6주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디폴트옵션을 적용하면 적립금이 전부 위험자산에 투자돼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지키려면 디폴트옵

션을 적용할 수 없고, 디폴트옵션을 적용하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험자산에는 얼마나 투자할 수 있나?

원리금보장상품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래서 IRP 적립금을 100% 투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채권형 펀드, 주식 비중이 40% 이하인 혼합형 펀드, 적격 TDF에도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디폴트옵션에 해당하는 상품에도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혼합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 리츠, 인프라펀드, 하이일드채권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IRP의 운용 제한

편입 가능 비율	대상 상품 및 특징
100%	- 원리금보장상품: 예금, 이율보증보험(GIC), 금리연동보험, 증권사ELB 등 - 실적배당상품: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주식 비중 40% 이하), 적격 TDF - 디폴트옵션 상품
70%	- 편입 가능 비율이 100%인 위의 상품이 아닌 경우 전체 자산의 70%까지 편입 가능 - 주식형 펀드, 하이일드채권형 펀드, 리츠 등

아니다. 위험자산의 가치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면 계속 보유할 수도 있다. 다만 위험자산을 추가로 매수할 수는 없다.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IRP를 운용하는 중에 위험자산의 가치가 상승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는 IRP 가입자에게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린다. 위험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때 비중이 높아진 위험자산을 일부 매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비위험자산을 매수하면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가입자가 무조건 한도를 초과한 위험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것은

IRP에도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나요?

마지정 씨는 IRP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디폴트옵션 상품을 정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도대체 디폴트옵션이 무엇이며,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걸까? 그리고 디폴트옵션 상품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걸까?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됐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둔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관련 법에서 디폴트옵션을 ‘사전지정운용제도’라 한다.

IRP 가입자도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하나?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IRP 가입자는 모두 자신의 퇴직계좌에 적립된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적립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되

면 수익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입자가 장기간 적립금을 방치하면 사전에 정해 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한 것이 디폴트옵션 제도다.

적립금을 전부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디폴트옵션을 정해야 하나?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적립금을 전부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어차피 만기가 없으니 디폴트옵션을 적용할 일이 없을 테니 말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디폴트옵션 설정은 법적 의무 사항이기도 하고, 나중에라도 적립금을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

IRP 가입자는 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 연금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는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은 크게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과 펀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펀드 유형은 다시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드펀드(BF), 단기금융펀드(SVF), SOC펀드로 분류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어떻게 작동하나?

디폴트옵션 상품을 정했다고 바로 적립금이 해당 상품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니다. 디폴트옵션이 작동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신규로 IRP에 가입한 경우부터 살펴보자. 이때는 가입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나서 2주 넘게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작동한다.

기존에 IRP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먼저 IRP에서 운용하고 있던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4주가 지났을 때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금융

회사에서 가입자에게 2주 후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날 때까지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적립금을 사전에 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까지 6주 동안 만기 금액은 어떻게 운용될까? 만약 만기 후 일정한 금리를 약속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6주간의 대기 기간 동안 약정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약관 또는 계약 사항을 따르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낮은 수익률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된다.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 전에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가입자가 만기 자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운용 지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운용 지시를 받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만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가입자가 원하면 만기 금액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남겨둘 수도 있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된 이후 다른 금융상품으로 바꿀 수 있나?

디폴트옵션은 언제까지나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던 적립금을 다른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디폴트옵션 상품이 정기예금처럼 만기가 정해져 있는 금융상품이면 중도에 해지했을 때 약정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

유형	운용 방법	
펀드 유형	타깃데이트펀드 (TDF)	투자 목표 시점을 미리 정하고, 운용 기간 경과에 따라 위험이 낮은 자산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하는 펀드
	밸런스펀드 (BF)	투자 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하고, 금융시장 상황과 자산 가치 변동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하는 펀드
	단기금융펀드 (SVF)	단기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SOC펀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펀드
원리금보장 유형	예금 등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한다는 TDF는 어떤 금융상품인가요?

김자은 씨는 IRP에서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나 투자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 준다는 TDF 투자를 고려 중이다. 이왕이면 본인의 투자 성향에 잘 맞는 TDF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점을 체크해 봐야 할지 궁금하다.

TDF라는 이름은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말이다. 타깃데이트펀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목표 시점 펀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TDF라고 부를 때가 더 많다. 그러면 TDF가 어떤 금융상품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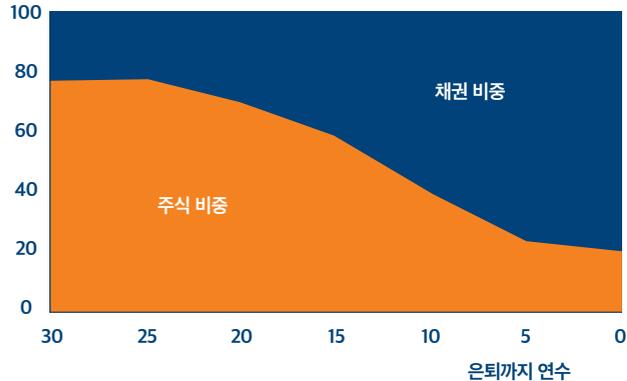
글라이드 패스란?

TDF는 장기 투자 상품이다. 노후자금 운용에는 축적에서부터 인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된다. TDF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연금자산을 맡아 운용한다는 점에서 초장기 금융 상품이다. TDF는 적립금을 다양한 국가와 자산에 분산해 투자

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예상 은퇴 시기에 맞춰 목표 시점(Target Date)을 선택하면 펀드가 알아서 자산 비중을 조절해 준다.

자산 비중 조절은 펀드에서 미리 정한 경로를 따라 진행된다. 목표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하다가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그 비중을 낮춰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 주식 비중이 차츰 줄어드는 것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경로를 닮았다고 해서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라고 한다.

TDF의 글라이드 패스



목표 시점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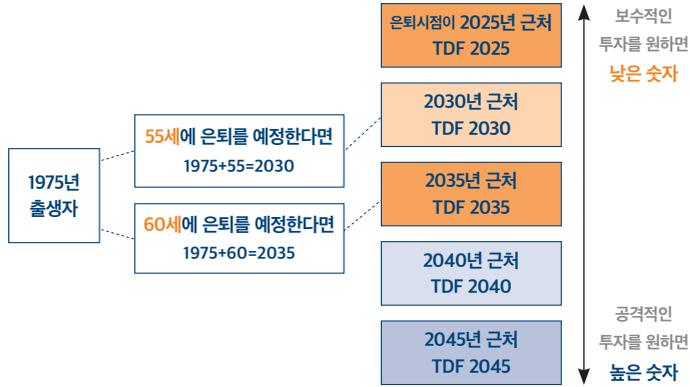
가입자가 자신의 은퇴 연령을 고려해 목표 시점을 정하면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의 출생 연도에 예상 은퇴 연령을 더하면 된다. 60세에 은퇴할 예정인 1975년생 직장인이라면 1975에 60을 더한 ‘2035’년이 목표 시점이 된다.

은퇴 연령과 함께 투자 성향도 고려해야 한다. 은퇴 연령이 같은 근로자도 위험 수용 성향은 다를 수 있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웬만한 손실 위험은 감수하겠다는 이도 있고, 수익을 좀 덜 얻더라도 안전한 투자 대안을 선호하는 이도 있다. 이 같은 투자 성향을 반영해 목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TDF 이름 뒤에 4자리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해당 펀드의 목표 시점이다. 2035라는 숫자가 있으면 2035년에 은퇴하는 투자자를 위해 운용하는 TDF라는 뜻이다. 하지만 2035년에 퇴직하는 투자자라고 해서 반드시 목표 시점이 2035년인 TDF를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목표 시점이 2030년인 TDF를 선택하면 되고, 공격적 성향을 가졌다면 204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TDF를 고를 수도 있다.

TDF를 선택하는 방법



TDF 수익률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항상 마주치는 문구는 “과거의 투자 성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을 고를 때 전적으로 과거 수익률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과거 성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해당 펀드가 과거에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지는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같은 기간 동안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된 다른 펀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야 한다. 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상품은 3년 이상 장기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TDF 간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동일한 목표 시점을 가진 TDF끼리 비교해야 한다. 그래야 주식과 채권 비중이 비슷한 TDF끼리 비교할 수 있다.

TDF 수익률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포털 사이트에서 TDF의 수익률을 목표 시점별로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1년 이하 단기 수익률만 조회할 수 있어 아쉽다. 하지만 좀 품을 팔더라도 각각의 TD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TDF가 설정된 이후 수익률까지 확인할 수 있다.

TIF는 어떤 금융상품이고, TDF와 어떻게 다른가요?

장수연 씨는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한다. 노후자금인 만큼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시중금리보다는 나은 수익을 얻고 싶다.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이런 생각을 얘기했더니, TIF라는 상품을 소개해 주었다. TIF는 어떤 금융상품인지 궁금하다.

TIF는 ‘Target Income Fund’의 머리글자로 만든 약어로, 직역하면 ‘목표 소득 펀드’라 할 수 있다. TIF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 비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밸런스드 펀드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한다는 점에서는 글로벌 자산배분펀드라고 할 수 있다. TIF 종류에 따라 운용 전략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주로 배당, 이자, 임대료 등 현금 흐름이 가져다주는 자산을 많이 편입한다.

TDF와 TIF는 어떻게 다른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잘 알려진 펀드 상품으로 TDF(타겟데이트펀드)가 있다. TDF와 TIF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 헛갈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두 금융상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두 상품 모두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투자를 목표로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하고, 펀드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TDF는 목표 시점(Target Date)을 정해 자산을 운용한다. 목표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그 비중을 줄여나간다. 이렇게 목표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의 비중이 줄어드는 형태를 ‘글라이드 패스’라고 부른다.

TDF와 달리 TIF에는 글라이드 패스가 없다. TIF는 주식 등 위험자산을 최대한 편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두고, 그 범위 내에서 펀드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고 리밸런싱한다. TDF와 마찬가지로 TIF도 글로벌 우량 자산에 분산투자한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 소득(Income)이 발생하는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편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TDF는 노후자금을 적립식으로 불러나갈 때 적합하다. 목표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등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따

라서 은퇴를 전후한 시기나 적립식이 아니라 목돈을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TI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내게 맞는 TIF를 선택하는 기준은?

TIF도 종류에 따라 운용 전략과 투자 대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투자 설명서와 과거 투자 성과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투자 대상 자산군을 살펴야 한다. 어떤 TIF는 채권, 부동산, 인프라 시설, 배당주 등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반면에 어떤 TIF는 채권에만 투자한다. 그리고 배당주와 채권에는 투자하지만 부동산과 인프라 시설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도 있다. TIF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는 투자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험자산 투자 비율도 확인해야 한다. TIF는 대부분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주식 등 위험자산의 편입 비율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상한선은 펀드마다 상이하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위험자산 편입 비율이 낮은 것을, 수익률을 우선한다면 높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운용 성과도 확인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변동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펀드의 변동성과 수익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샤프 비율(Sharpe ratio)이 있다. 샤프 비율이란 위험 대비 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샤프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 대비 높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면 된다.

TDF와 TIF의 차이점

구분	TIF	TDF
투자 전략 투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 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 - 펀드매니저의 재량에 의해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 배당, 임대료 등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자산에 투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우량 자산에 분산투자 한다.
위험자산 투자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 최대 비중이 고정돼 있다. (0%, 20%, 40%, 60%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시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 자동 축소

장기용 씨는 IRP 적립금을 ETF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적립금을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려고 했더니, 원하는 원자재 ETF를 찾을 수 없었다.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IRP 적립금을 ETF에 투자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IRP 가입자가 모두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ETF 거래를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ETF 투자가 가능한 IRP이더라도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 중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것에만 투자할 수 있다. 또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따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IRP 가입자는 모두 ETF에 투자할 수 있나?

모든 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ETF에 투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IRP는 증권, 은행,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부 대형 증권사에서만 ETF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고

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신탁을 이용해 ETF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증권사처럼 실시간 매매를 할 수는 없고,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하루 정도 지연해 거래가 체결된다. 만약 IRP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ETF 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면 ETF 거래가 가능한 다른 연금사업자로 IRP 적립금을 옮길 수 있다.

어떤 ETF에 투자할 수 있나?

IRP 적립금을 ETF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종류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고,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는 투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증시에도 S&P500, 나스닥, CSI 300과 같은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다양한 ETF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된 ETF라고 해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수 등락 폭의 2~3배만큼 움직이는 레

버리지 ETF나 지수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는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달러 등의 통화 선물에 투자하는 ETF나, 원자재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원자재 ETF라고 하더라도 선물이 아니라 현물에 투자하는 것에는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을 전부 ETF에 투자할 수 있나?

IRP도 퇴직연금의 한 종류다. 따라서 IRP에도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적용된다. IRP 적립금 중 많아야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대표적 위험자산으로는 주식 편입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혼합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가 있다. ETF도 펀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적립금 중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적립금을 전부 ETF에 투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흔히 ETF라고 하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ETF만 떠올리지만, 국채나 우량 회사채 지수를 따르는 채권 ETF도 있

다. 따라서 이들 채권 ETF에 적립금 중 30% 이상을 맡기고 나머지를 주식 ETF에 투자하면 ETF만 가지고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주식 편입 비중이 낮아 IRP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다.

자동이체로 저축하면 ETF를 알아서 매수해 주나?

IRP 가입자 중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자동이체 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IRP 가입자가 자동이체로 저축하면 금융회사가 자동이체 된 돈으로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둔 ETF를 매수해 주면 안 될까? 일반 펀드는 이와 같은 자동 매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ETF는 할 수 없다. 일반 펀드는 하루 동안 하나의 기준 가격으로 거래하지만, ETF는 거래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ETF를 언제 얼마에 사고팔지는 IRP 가입자가 직접 결정해야지 금융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세금은 얼마나 되나?

ETF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분배금과 매매차익으로 나뉜다. 분배금이란 ETF에서 발생한 주식 배당금이나 채권 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일반 주식 위탁 계좌에서는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원천징수 한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채권형 ETF와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IRP에서 ETF에 투자할 때 과세 방법은 다르다. IRP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배금이든 매매차익이든 관계없이 이를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다. 대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세율(3.3~5.5%, 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18

적립금을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이부동 씨는 부동산 투자를 좋아한다. 주식에 비해 안정적이고, 꾸준히 임대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IRP 적립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리츠를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리츠는 무엇이고,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궁금하다.

많은 사람이 노후생활비에 보탬이 될 소득원으로 부동산 임대 소득을 생각한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은 찾기도 어려운 데다 대규모 자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금 가입자가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금으로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가능하다. IRP 적립금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츠는 어떤 금융상품인가?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

고, 여기서 발생한 임대료와 개발 관련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리츠에서 발생한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리츠에 투자하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도 건물주가 누리는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리츠의 기본 구조



리츠에 투자할 때 살펴야 할 것은?

리츠에 투자할 때는 투자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투자 대상의 상황이 어떤지부터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리츠라면 제일 먼저 공실률부터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 리츠의 주된 수입은 임대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같은 권역

내에서도 오피스마다 공실률 차이가 크다. 따라서 현재의 임차인 구성 현황과 개괄적 계약 내용을 살펴 현재의 공실률뿐만 아니라 미래에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최근에는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 등 소매업에 활용되는 리테일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가 늘어나고 있다. 리테일 리츠에 투자할 때는 마스터 리스(master lease) 계약 여부와 조건을 살펴야 한다. 마스터 리스란 하나의 자산관리 업체가 건물주한테서 부동산을 통째로 임대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일부 임차인 때문에 임대 수입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호텔에 투자하는 리츠도 있다. 호텔 투자는 임대 수입이 아니라 운영 수익에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 투자에 비해 수익성을 판단하기 까다롭다. 임대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데 반해, 호텔을 운영해 얻는 수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오피스, 리테일, 호텔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증가의 수혜를 받는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리츠와 가구 증가 및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임대주택 리츠도 주목해 볼 만하다.

리츠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는 동시에 해당 리츠가 꾸준하게 높은 수익을 배당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리츠는 임대 수익 등으로 거둬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2022년 9월 현재 국내 거래소에는 20개 리츠가 상장되어 있는데, 이 중 17개 종목이 1년에 2회 이상 배당하고 있다.

IRP 적립금을 전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나?

모든 IRP에서 리츠 투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연금 투자자 전용 매매 시스템을 갖춘 일부 증권사의 IRP에서만 리츠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IRP 적립금을 리츠에 전부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리츠도 위험자산 중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5

현명하게 인출하는 방법

19.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나요?
20. 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1.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22. 연금을 개시하면 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요?
23. 한 해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나요?

박중도 씨는 최근 인사 발령이 나서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한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매입할 형편이 안 돼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도 만만치 않게 비싸다. 있는 돈을 전부 끌어모아도 자금이 부족해 IRP 적립금 중 일부를 꺼내 썼으면 한다. IRP 적립금 중 일부만 인출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원칙적으로 IRP적립금 중 일부만 중도에 인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하면 IRP를 전부 해지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까?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때는?

IRP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또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단, 기업형

IRP의 경우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도인출은 사업장당 1회
까지만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
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 단, 기업형 IRP의 경우 해당
의료비가 본인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중도인출이 가
능하다. 이 밖에 가입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되거
나,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립금
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중도인출 하는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나?

IRP 적립금을 중도인출 해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가입자의 개인회생과 파산선고, 천재지변으로 인
해 중도인출을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해 낮은 세율
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요양 의료비를 명목으로 인출
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는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

문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부담, 사회
적 재난에 의한 피해 등은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중도인출을 할 때는 IRP를 전체 해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

IRP 적립금은 그 원천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
저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가 있다. 퇴직급여 이외에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도 있다.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은 다시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RP 가입자가 한 해에 1,000만 원을 저축했는
데, 이 중 700만 원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3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에 해당한다. 마
지막으로 이체한 퇴직급여와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에서 발생
한 운용 수익이 있을 수 있다.

IRP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에서는 세액공

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부터 내어준다. 이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전부 소진되면 금융회사는 다음 순서로 퇴직급여를 내어준다. 이때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부과한다.

퇴직급여까지 전부 인출하고 나면 금융회사는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내어준다. 이때도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낮은 세율(3.3~5.5%, 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IRP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적용 세율

구분	중도인출 시 적용 세율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저축 금액과 운용 수익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 금액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소득세 (5.5~3.3%)	과세 제외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기타소득세 (16.5%)		
사회적 재난 (코로나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치료)			

* 요양 의료비 중 연금소득세 적용 범위 = 의료비+간병인 비용+(휴직 월수×150만 원)+200만 원
기업형 IRP의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초과 시 중도인출 가능

** 기업형 IRP의 경우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도인출은 사업장당 1회만 가능

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중첩 씨는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노후에는 두 계좌를 합쳐 한 군데서 연금을 받고 싶다. 가능할까? 혹시 가능하더라도 계좌를 통합했을 때 불이익은 없을까?

연금저축과 IRP 등 여러 연금계좌에 흩어져 있는 노후자금을 한 곳으로 통합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까? 계좌이체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연금저축 간, IRP 간 계좌이체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연금저축과 IRP 사이에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간 계좌이체가 가능한 조건은?

연금저축과 IRP 간 이체를 하려면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연금수령 요건은 연금저축 또는 IRP 가입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를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충족된다. 다만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연금계좌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연금수령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든 경우나 방식으로 이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체할 때는 적립금을 전부 이체해야지 일부만 이체할 수는 없다. 또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는 반면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생명보험사에서 종신행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없다. 그리고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그 전에 가입한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계좌이체를 할 때 투자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일부 증권사에서는 해당 증권사 IRP와 연금저축 간 이체에서 현물 이전을 해주지만, 대부분은 현물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체하려는 계좌에서 가입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한 다음 계좌이체를 하고, 다시 금융상품을 매수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간 이체가 가능한 경우

- ① 만 55세 이상
- ②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 단, 이연 퇴직소득이 포함된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가능
- ③ 전액 이체하는 경우
 - 단, 2013년 3월 1일 이전 계좌 또는 연금수령 중인 계좌로는 이체 불가

연금저축과 IRP 간 계좌이체를 할 때 살펴야 할 것은?

계좌이체를 활용해 흩어진 연금계좌를 통합하면 노후자금 관리가 수월해질 수 있다. 아무래도 노후자금을 한 계좌에 통합하면 포트폴리오 관리도 용이하고, 연금 개시 이후 현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를 통합할 때는 몇 가지 살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중도인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에서는 언제든지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적립금 중 일부만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IRP 자체를 해지해야 한다. 이렇게 중도해지를 하면 연금을 수령할 때보다 세 부담이 커진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IRP는 계좌 하나에서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와 ETF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원리금보장상품은 가입할 수 없다. 위험자산 투자한 도 역시 살펴야 한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는 이 같은 위험 자산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수수료도 비교해 봐야 한다. 연금저축에는 별다른 계좌관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IRP에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IRP로 계좌이체 하면 추가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연금저축과 IRP 간에 이체할 때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없다.

21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올해 예순인 이광복 씨는 다음 달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 씨는 퇴직금으로 2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로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생각했던 것보다 커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까 한다. 이 씨가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

이광복 씨처럼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남은 금액만 받는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은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하면 되는데, 이때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감면받나?

IRP로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

다. 이때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연금 개시 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광복 씨(60세)를 예로 들어보자. 이 씨가 다음 달에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2억 원을 IRP에 이체하고,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보자. IRP에서 연금을 개시하면 처음에는 퇴직급여 원금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에는 퇴직급여 원금을 인출하는 동안 운용하여 얻은 수익이 인출된다. 이 씨의 경우 퇴직급여 원금이 2억 원이고 한 해에 2,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면 처음 10년 동안에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인출하고, 11년 차부터는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먼저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부터 살펴보자. 우선 이 씨의 퇴직소득세율부터 계산해 보자. 만약 이 씨의 퇴직급여 2억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2,000만 원이라면 퇴직소득세율은 10%이다. 따라서 연금 개시 후 10년 동안은 연금소득세 명목으로 연금수령액의 7%(퇴직소득세율 10%의 70%)가 부과된다. 이 씨가 연금으로 한 해에 2,000만 원을 수령할 때마다 140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즉 퇴직급여가 2억 원이므로 이 씨는 매년 2,0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서 총 1,400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했을 때 퇴직소득세로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을 600만 원이나 절약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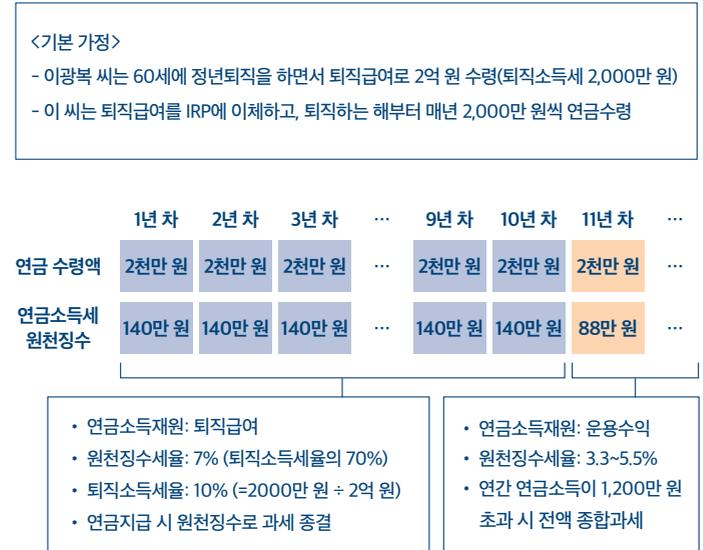
연금수령 기간을 늘리면 세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다.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씨가 퇴직급여 2억 원을 IRP에 이체하고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10년 차까지는 7%, 11년 차부터는 6%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운용 수익에는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해 정기에금에 예치했다고 해보자. 이때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 세율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IRP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

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이광복 씨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과세 사례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 방법과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다. 연금 수령자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로 과세한다. 종신형 연금을 수령하면 5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도 4.4%의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예순인 이광복 씨가 퇴직급여 2억 원을 IRP에 이체하고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급여 원금을 재원으로 연금이 지급되고, 11년 차부터는 10년 동안 퇴직급여를 운용해 얻은 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11년 차가 되면 이 씨의 나이는 70세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이 씨에게 연금을 지급하면서 4.4%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연금액이 2,000만 원이면 금융회사는 그중 88만 원을 세금으로 원천징수 한다.

한 해에 연금을 1,200만 원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를 하지 않나?

IRP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한 해에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그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다. 하지만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

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다만 이때도 연금수급자가 희망하면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납부할 수 있다.

앞서 이광복 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이 씨는 퇴직급여 2억 원을 IRP에 이체하고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했다. 이 경우 처음 10년 동안은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퇴직소득세율(10%)의 70%에 해당하는 7%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과세는 종결된다.

그런데 11년 차부터는 퇴직급여를 운용해 얻은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11년 차에 이 씨 나이는 70세다. 금융회사는 이 씨에게 2,0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면서 88만 원(세율 4.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과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이 씨는 이듬해 5월에 해당 연금소득 2,000만 원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하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해야 한다.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1,200만 원 이하 인출 시 적용되는 세율(3.3~5.5%)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11년 차부터 한 해에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퇴직급여가 전부 소진되는 때에 해당 사실을 IRP 가입자에게 알려 연금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연간 인출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의 재원에는 운용 수익뿐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도 포함된다.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 인출 순서와 과세 방법

인출 순서	연금 재원	과세 방법과 세율
1순위	퇴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분리과세 종결) ▶ 원천징수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차 이내 - 퇴직소득세율의 70% · 11년 차 이후 - 퇴직소득세율의 60%
2순위	운용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조건부 분리과세) ▶ 원천징수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69세 - 5.5% (종신 수령 시 4.4%) · 70~79세 - 4.4% · 80세 이상 - 3.3% ▶ 한 해에 연금소득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세율로 분리과세 중 선택

오연주 씨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10년 전 IRP에 가입해 매달 100만 원씩 적립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급여 2억 원도 이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한 해에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그런지 궁금하다.

IRP에 적립된 돈은 원천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IRP에는 한 해에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한 해에 9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저축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도 있을 수 있다.

연금 인출 순서와 과세 방법은?

IRP 가입자가 연금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연금으로 지급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할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는 퇴직소득세율 70%(11년 차부터는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해 지급하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금융회사는 연금을 지급하면서 낮은 세율(3.3~5.5%, 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세율은 연금 수급 당시 가입자의 나이와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다르다. IRP 가입자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로 과세한다. 종신형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55세부터 69세 사이에도 4.4%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연금소득세율	
	종신연금 이외 수령 시	종신연금 수령 시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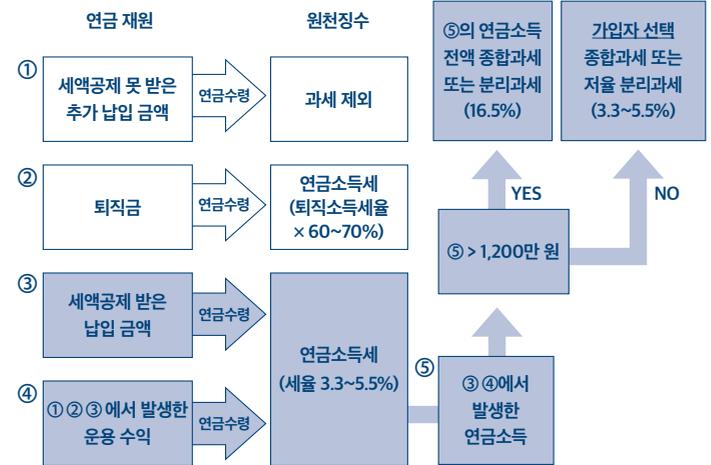
연금소득은 어떤 경우에 종합과세 되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 따라서 이 둘은 종합과세 될 우려가 없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한 해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 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한 해에 1,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연금수급자가 희망하면 종합과세 해달라고 신고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6.6~49.5%)이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3.3~5.5%)보다 낮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원천징수로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 인출 순서와 과세 방법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이유는?】

2022년 이전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한 해에 1,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해왔다. 이렇게 되면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IRP를 중도해지 할 때 납부하는 기타소득세율(16.5%)보다 종합소득세율(6.6~49.5%)이 더 높을 수도 있다.

IRP를 중도해지 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다. 따라서 한 해에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래서 연금소득에 16.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IRP를 중도해지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023년부터 한 해에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연금 수급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3

한 해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한도연 씨는 이번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기존에 노후자금을 적립해 오던 IRP 이체했다.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IRP에서 한 해에 최대 얼마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 한 씨는 세제 혜택을 받으면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많이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

IRP에서는 한 해에 최대 얼마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IRP가 적립금을 한꺼번에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다.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과세하지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는 금액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인 기타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한 해에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자가 55세가 넘어야 한다. 다만 IRP에 퇴

직급여를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가입자가 55세 이상만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은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자마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IRP에서 한 해에 최대 얼마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IRP를 평가해야 한다. 연금수령을 개시한 해에는 연금 개시를 신청한 날의 IRP 잔고를 기준으로, 이듬해부터는 매년 과세 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IRP 잔고를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를 평가한다.

다음은 과세 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의 IRP 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눌 차례다. 연금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을 1년 차로 본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의 120%가 그해 연금수령한도가 된다.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개시일(개시 이후는 매년 1월 1일) 평가금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예순 살인 한도연 씨는 2022년 9월 30일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급여 2억 원을 IRP(2014년 개설)에 이체했다. IRP에는 퇴직급여 이외에 1억 원이 적립되어 있었다. 한 씨는 퇴직연금을 IRP에 이체하자마자 연금을 개시해 달라고 신청했다.

연금 개시 신청 당시 계좌 평가금액은 3억 원이다. 3억 원을 10(11-1년 차)으로 나누면 3,000만 원이고, 이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3,600만 원이 첫해 연금수령한도다. 한 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3,6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년 차는 2023년 1월 1일에 시작된다. 2년 차 연금수령한도는 2023년 1월 1일 IRP 평가금액을 9(11-2년 차)로 나눈 금액의 120%가 된다. 이후 10년 차까지 연금수령한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IRP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해를 6년 차로 기산한다. 2013년 3월 1일 전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급여를 전부 IRP로 이체한 경우에도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해를 6년 차로 기산한다. 이렇게 되면 연금수령한도가 2배 늘어난다.

앞서 한도연 씨가 퇴직급여를 이체한 IRP가 2013년 3월 1

일 이전에 가입한 것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연금을 개시하는 해에는 7,200만 원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신청 당시 평가금액 3억 원을 5(11-6년 차)로 나누면 6,000만 원이다. 따라서 6,000만 원의 120%에 해당하는 7,200만 원이 첫해 연금수령한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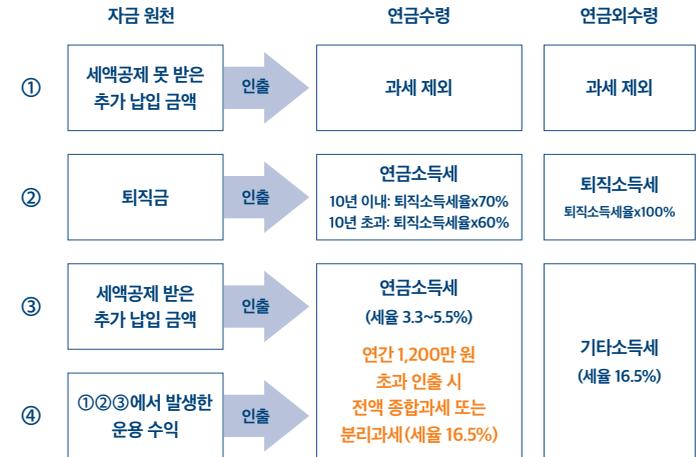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세금은?

IRP에서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으로 보고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재원에 따라 다르다. 연금을 개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부터 인출되는데, 이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에는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한 해에 1,200만 원을 넘으면 해

당 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그렇다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이때도 적용 세율은 재원에 따라 다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는 세액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과세한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연금외수령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16.5%(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에 따른 과세



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IRP 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

초판 1쇄 발행 2022년 11월 25일

2판 2쇄 발행 2023년 5월 10일

지은이 이규성, 윤치선

기획 이동근

검수 정효영

편집 몽스미디어

디자인 모스그래픽

펴낸곳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investpension.miraeasset.com)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타워1 13층

-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언급된 기업들은 해당 주제에 부합하는 사례로 제시되었을 뿐, 투자 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

